기후환경본부 ‘18년 4/4분기 예산전용 보고
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55조의2(예산집행상황 등의 제출) 제2항에 따라,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림

▢ 4분기 전용내역 : 2건 71,424천원

○ 세부내역

(단위: 천원)

연번	부서	정책사업	세부사업	통계목	예산액	전용금액		승인일
						감액	증액	
계						71,424	71,424	
1	대기정책과	대기환경개선 및 친환경 교통차량 보급	천연가스 자동차 보급	민간경상사업보조	5,471,161	70,000	-	’18. 10.23.
			운행차 저공해 사업 -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	자산 및 물품취득비	0	-	70,000	
2	기후대기과	기후변화 총괄 대응	석면관리 사업	사무관리비	144,800	1,424	-	’18. 12.19.
			석면피해구제급여	사회보장적 수혜금	124,600	-	1,424	

○ 전용사유

《 ① 대기환경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》

-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기존 단속시스템(CCTV)과 병행하여 이동형 단속시스템을 차량에 탑재함으로써 노후차량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예산을 전용함

▸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(CCTV)으로 노후차량 단속을 하고 있으나 노후차량의 운행이 잦은 지점을 단속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져 차량 2대를 구입하여 단속시스템을 부착함

· 산출내역 : 35백만원(니로하이브리드) × 2대

· 운행제한시스템 지속 확대 : 51개('18년) → 66개('19년) → '100개 지점('20년)

▸ 이를 위해 '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'의 민간경사업보조비 일부를 '운행차 저공해 사업'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함

〈 **미세먼지 저감 관리 단속 차량** 〉

《 **② 기후변화 총괄 대응** 》

- '18년말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자(사망자) 및 요양급여(병원비) 증가로 인하여 급여 지급소요가 발생하였으며, 이에 따른 집행 예산이 부족하여 석면관리 사업예산(낙찰차액 등)을 전용함

▸ 사망자 증가(15.4%) : 13명('17년) → 15명('18년)

▸ 2018년은 전년 대비 122,140천원보다 2.0% 증가한 124,600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, 사망자 증가(15.4%) 및 요양급여연말 신규 특별 유족 인정자 발생에 따라 추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소요 발생